5. 주거취약가구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MH마포하우징

긴급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 ~ 계속

○ 사업대상

- 재난,강제퇴거,가정폭력 등 긴급 주거 위기가구
- 공공임대주택(영구 · 매입임대 등) 입주 대기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

○ 사업내용

- 긴급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시거소 운영
-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 주거취약가구의 임대보증금 등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 매입임대주택 확보 추진 : 주거취약가구 지원 및 수요자 맞춤형 등으로 운영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제15조(주거비 보조),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및 제45조의 2(기존주택의 임차)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및 동법시행령 제4조(주거지원)
- MH 마포하우징사업 추진 기본계획(2018.11.2)

▣ 세부추진계획

○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 2019년 상반기 중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승계하여 운용

○ 긴급 주거위기가구 임시거소용 주택 확보 : 2019년 상반기 중

○ 임시거소 등 운영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 2019년 하반기 중

▣ 소요예산 : 3,400,000천원(기금)

▣ 기대효과

○ 긴급 주거위기가구 및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생활보장과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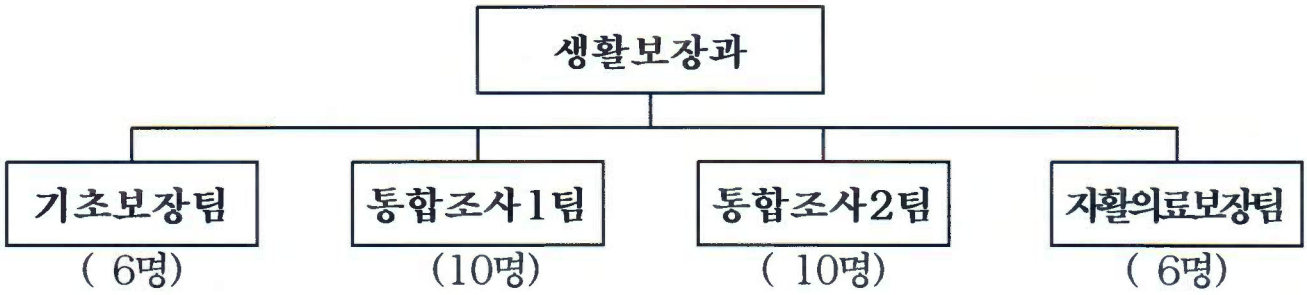

【인력현황】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32		1	6	7	11	7	
현 원	32		1	7	6	8	10	

※ 현원에 육아휴직 7명(7급 3명, 8급 3명, 9급 1명) 미포함

【시설현황】

○ 마포지역자활센터(대표자: 창기정)

- 소재지 : 마포구 상암동 1460번지
- 면 적 : 788.31㎡

【복지급여 수급자 현황】

(2018.12.31.기준)

구분	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	한부모 가족	기초 연금	장애 연금	차상위 보호	초중고 교육비 지원	아동 수당	타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세대	51,865	4,210	4,614	5,015	794	157	498	21,179	1,719	2,217	1,872	9,275	315
가구원	67,860	5,851	6,669	7,308	1,082	189	961	26,158	1,760	2,970	2,644	11,465	803

※ 타법의료급여(11종) : 북한이탈주민, 군입대자, 시설입소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국내입양아동, 광주민주화,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 행려환자, 기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급여 지원

최저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고 선정기준 다층화, 급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수급자의 자립유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633가구 20,910명

(2018.12.31.기준)

보장구분	선정기준	가구	인원(명)	비 고(사업팀)
기초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4,210	5,851	기초보장팀
기초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4,614	6,669	자활의료보장팀
기초주거급여	중위소득 44% 이하	5,015	7,308	주거복지팀
기초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794	1,082	서울서부교육청

▣ 세부추진계획

○ 맞춤형급여지원 기본계획 수립 : 2019. 1.

○ 맞춤형급여 보장결정 : 수급대상자 적극 발굴, 신속한 자격 결정

○ 맞춤형급여(생계, 해산·장제급여) 지급 : 행복e음을 통한 적기 지급

○ 급여관리의 적정성 제고

▣ 소요예산 : 22,000,832천원

○ 생 계 급 여 : 21,743,768천원

○ 해산장제급여 : 155,064천원

○ 교 육 급 여 : 102,000천원

▣ 기대효과

○ 급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욕구 충족 및 안정적 자립기반 제공

○ 수혜자 중심의 지원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2.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문적 통합조사 및 관리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통합조사 관리로 수급자 적정관리와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최저생활 보장과 적극적 보호로 저소득주민의 사회안전망 확보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사업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등 22개 사업 복지대상자

○ 사업규모 : 67,860명 (단위:명)

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	한부모 가족	기초 연금	장애 연금	차상위 보호	초중고 교육비 지원	아동 수당	타 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67,860	5,851	6,669	7,308	1,082	189	961	26,158	1,760	2,970	2,644	11,465	803

▣ 세부추진계획

○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를 위한 연간조사계획 수립 : 2019. 1.

○ 보장별 신규신청 통합조사 및 확인조사, 인적정비, 자격변동 관리 : 연중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확인조사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 중점관리대상자(부정수급자 등) 및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점관리

○ 신청보장 제외 시 타급여 보장 서비스 적극 연계 : 연중

○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간연계보장체계 운영 : 연중

○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저소득층 권리구제 활성화 : 연중

○ 담당직원 역량강화 : 통합조사 심층사례회의 및 학습동아리 운영

▣ 소요예산 : 16,230천원

▣ 기대효과

○ 맞춤형급여 전문적 통합조사 강화로 보장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

○ 저소득층 주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 보장

3.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기준 미달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 발굴·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1. 1. ~ 12. 31.

○ 추진사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지원**
  -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맞춤형 생계급여의 1/2~1/3수준), 해산·장제급여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 지원대상 : 질병·실직·사고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및 수급자
  - 지원내용 : 가구원별 특별생계비 및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역보험가입자(노인·장애인·한부모) 중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 지원내용 : 노인·장애인·한부모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 세부추진계획

○ 저소득주민 지원계획 수립 : 2019. 1.

○ 대상자 발굴 및 지원 : 연중

▣ 소요예산 : 640,000천원(구비 240,000천원, 시비 400,000천원)

○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 400,000천원(시비 100%)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 200,000천원(구비 100%)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40,000천원(구비 100%)

▣ 기대효과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적극적 발굴과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응급 지원을 통한 가계경제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안전망 가동

4. 사전예방·맞춤관리! 의료급여 지원

저소득 빈곤층의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 촉진 및 사례관리 활성화로 의료인식 개선 및 적정 의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5,071세대 7,499명

(1종 : 4,393명, 2종 : 2,303명, 군입대 및 타법 : 803명)

○ 근　　거 : 의료급여법

○ 사업내용

- 맞춤형 의료급여 :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 본인부담 완화 :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 보상,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등
- 의료급여 사례관리 : 의료급여서비스 이용 교육 및 서비스 연계 등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 연장승인, 선택병·의원 지정 관리 등

▣ 세부추진계획

○ 의료급여사업 운영계획 수립 : 2019. 1.

○ 의료급여서비스 이용교육 : 반기별

○ 의료급여대상자 맞춤 서비스 지원 : 연중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연중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및 약물 중복투약자 맞춤형 사례관리 : 연중

▣ 소요예산 : 461,144천원 (국비 50%, 시비 50%)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급여 자격관리로 의료서비스 적기제공

○ 맞춤형 사례관리로 합리적인 의료이용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도모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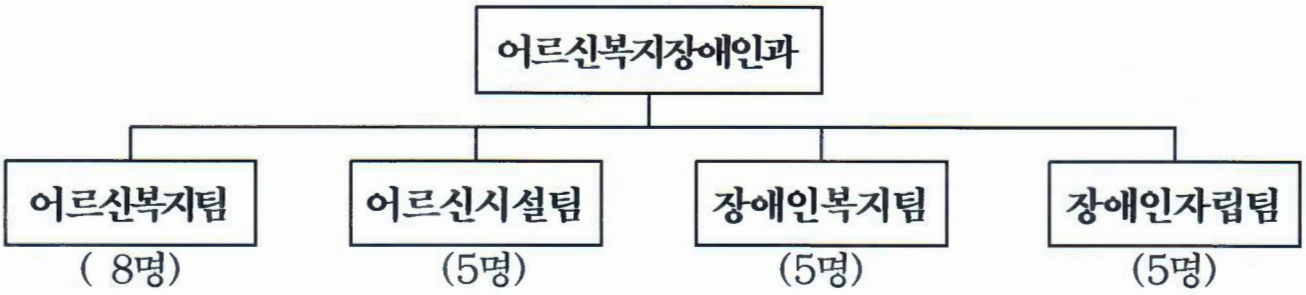

【인력현황】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2		1	5	6	5	5	
현 원	23		1	5	6	6	5	

※ 육아휴직 1명(9급 시간선택제), 8급 1명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노인복지시설현황】

계	여가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복지관	소규모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196	2	2	155	14	3	2	14	3	1

【장애인복지시설현황】

계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작업재활시설	개인운영시설	기타시설
23	5	7	1	4	3	3

【노인인구, 장애인 및 베이비부머 현황】 (2018. 12. 31.기준)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베이비부머(55년~63년생)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48,308	20,219	28,089	13,225	7,492	5,733	43,060	20,601	22,459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1.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18. 12. 31.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26,038명

○ 선정기준액(2019년 기준)

구분	선정기준액	기본공제
단독가구	137만원	▪ 일반재산(주택) - 1억 3,500만원 ▪ 금융재산 - 2,000만원 ▪ 근로소득 - 9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부부가구	219.2만원	

○ 지급금액
- 단독 수급/부부1인 수급 : 25,000원~250,000원
- 부부2인 수급 : 1인당 25,000원~200,000원

※ 2019.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대상으로 최대 30만원 인상 지급 예정

○ 지급방법 : 매월 1회(25일) 개인별 계좌이체

○ 추진근거 : 기초연금법

▣ 세부추진계획

○ 기초연금 감액 제도 개선 및 지급 계획 수립 : 2019. 1.
- '2만원 단위감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으로 형평성 있는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환수 : 2019. 1.~12.

○ 기초연금 집중 홍보(어버이날행사, 경로행사 등) : 2019. 5월, 10월

▣ 소요예산 : 76,588,893천원

▣ 기대효과

○ 노인의 소득보장으로 노후 생활 안정 지원

○ 노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